

컴플라이언스 정책

[정책 관리 정보]

제정 일시 : 2025년 12월 1일

주관 부서 : 인사총무Part

결재 승인 : 대표이사(CEO)

1. 개요

1) 제정 목적

본 정책은 LS머트리얼즈(이하 "회사")가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,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국내외 법규 및 내부 규범과 노동·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적용 범위

- (1) 본 정책은 회사의 임원 및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. 또한 회사는 출자법인, 자회사, 협력회사, 대리인, 위탁업체 등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정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의 준수를 권장한다.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, 행동규범, 교육, 점검, 평가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협력회사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수준을 확인하고,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(2) 본 정책에서의 컴플라이언스는 공정거래, 반부패, 인사노무, 노동·인권, 정보보호, 안전, 환경, 재무, 지식재산권, 생산, 품질, 연구개발 등 회사 경영 전반의 영역을 포함한다.

2. 기본 원칙

1) 준법경영의 기본 방침

- (1)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 법규 및 내부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,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(2) 회사는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리스크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
- (3) 회사는 준법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지원한다.

2)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의 준수

- (1) 회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, 가격·생산량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를 하지 아니한다.
- (2)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아니하며,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.
- (3)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.
- (4)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 및 건전한 상관습을 준수한다.

3) 부패방지 및 반부패

- (1)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, 접대, 편의, 리베이트, 급행료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·제공하지 않는다.
- (2) 회사와 임직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공직자, 고객, 협력회사, 대리인, 중개인 등 어떠한 이해관계자에게도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(3) 선물, 접대, 기부, 후원, 출장 지원, 행사 초청 등은 관련 법규와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당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거래상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한다.
- (4) 회사와 임직원은 대리인, 중개인, 협력회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(5)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직원은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회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(6) 회사의 자금과 자산은 정당한 업무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, 허위 또는 부정확한 회계처리, 비용 청구, 자금 집행을 금지한다.
- (7) 회사는 부패방지 및 반부패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, 점검,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.

4) 노동·인권의 존중

회사는 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, ILO 핵심협약, OECD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·노동 기준을 준수하며,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

-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, 국제기준 및 국내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여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차별의 금지 및 다양성 존중

- 성별, 인종, 국적, 연령, 장애, 종교, 사회적 신분,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·평가·보상에서 차별하지 아니하며,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조성한다.

③ 공정한 근로조건의 보장

- 법정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고,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한다.

④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

- 헌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단결권,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,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한다.

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방지

- 모든 형태의 괴롭힘, 폭력, 강요 및 비인도적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며,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 및 구제 절차를 운영한다.

⑥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

-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협력회사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.

⑦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

- 고객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, 인권 친화적 가치가 반영된 책임 있는 공급망을 조성한다.

5) 정보보호 및 자산의 관리

- (1)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·관리한다.
- (2) 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 경영정보가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(3) 회사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.
- (4) 회사의 유형·무형 자산을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보호한다.

3. 컴플라이언스 운영 및 제보

1) 컴플라이언스 운영 체계

- (1)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두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법규 및 내부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- (2)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이행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며, 준법경영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다.
- (3)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범의 제·개정 사항을 확인하고, 임직원 교육, 리스크 점검, 제보 접수 및 조사 지원, 개선조치 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총괄한다.
- (4) 각 조직의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이 본 정책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·감독하며,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(5)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, 본 정책 및 회사의 내부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행위 또는 위반 우려 사항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- (6)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고, 주요 리스크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별도의 교육과 안내를 시행한다.

2)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

- (1) 회사는 법규, 본 정책 및 내부 규범 위반행위 또는 위반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운영한다. 제보 대상에는 부패행위, 공정거래 위반, 인권침해,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, 정보보호 위반, 회사 자산의 부정 사용, 이해상충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위반행위가 포함된다.
- (2) 제보는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 채널, 이메일, 전화, 서면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익명 제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.
- (3) 회사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한다.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(4)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, 제보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며,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해고, 징계, 인사상 불이익, 차별, 보복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.
- (5) 회사는 조사 대상자의 권리와 명예도 함께 보호하며,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(6) 고의적인 허위 제보,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제보, 증거 조작 등 부정한 목적의 제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(7) 회사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, 시정조치, 재발방지 교육, 업무 프로세스 개선, 계약상 조치,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,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정책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개정) 본 정책의 제정 및 개정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.
- 3. (소관 부서) 본 정책의 소관 부서는 인사총무Part로 한다.